

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56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20.

발 의 자 : 박완주 · 강훈식 · 박주민

남인순 · 노웅래 · 김민기

백혜련 · 원혜영 · 정성호

추미애 · 안규백 · 유승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3년제 대학으로 학생은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 및 물품 등을 지원받고 있음.

한국농수산대학은 「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고 있지만,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의무 영농·영어 이행 대상자가 농어업활동과 거리가 먼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재직한 것으로 밝혀져 의무 영농·영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, 관리·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·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·감

독을 강화하고 협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안 제9조제2항 신설).
- 나.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중에 퇴직,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(안 제9조제3항 신설).
- 다.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의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4항 신설).

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”를 “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. 이하 같다”로 하 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 항의”를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”로 한다.

②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 안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 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중에 퇴직,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 농수산대학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의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건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·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학비지원 및 조건이행) ①</p> <p>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(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)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실습비·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9조(학비지원 및 조건이행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<u>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. 이하 같다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</p>
<p><신 설></p>	

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 지원 및 조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</u></p>	<p><u>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중에 퇴직,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자의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----- ----- ----- -----.</u></p>
--	---